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4. 7 선고 2022가단12660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김현철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민 담당변호사 권상경

변 론 종 결 2023. 2. 10.

판 결 선 고 2023. 4. 7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과 망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8. 14. 체결된 매매계약을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

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본안전 항변

이 사건 소는 원고가 망 D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2021. 3. 12.자로 발급받은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소명자료로 제출한 바 있으므로 그 당시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.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때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경과된 이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피고들은 본안 전 항변을 한다.

살피건대,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위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, 그 법률행위로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,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2. 피보전채권의 존부

원고는 망 D에게 2015. 3. 31. 5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 D가 피고들에 2020. 8. 14.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망 D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,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망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4297호로 제기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5억 원의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2023. 1. 19.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, 원고가 망 D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성호

목 록

1동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송파구 E, F에 있는 G동

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송파구 H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4층 아파트

1층 내지 14층 각 856.854㎡

지하실 856.854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서울특별시 송파구 E 대 67055.8㎡

서울특별시 송파구 F 대 36324.8㎡

전유부분 건물의 표시

건물번호 : I

건물내역 : 철근콘크리트조 130.93㎡

대지권의 표시

소유권대지권 103449.2분의 78.60 畓.

